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56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김 현 · 임오경 · 박해철
조계원 · 김 윤 · 송옥주
윤준병 · 박지원 · 이성윤
전진숙 · 김남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주요내용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생자의 피해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기간의 삭제(안 제25조제2항).

법률 제 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다만,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u></p>	<p>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p>